

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4-15호

## 학부모위원회(유치원) 보궐선출 공고

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(유치원)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##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● 제33조[결격사유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: 군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보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간: 2024년 5월 13일 ~ 5월 21일까지(09:00~16:00)(토, 일, 부처님오신날 제외, 6일간)
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탐색)

### 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: 2024년 5월 28일(화) 09:00 ~ 15:00

나. 선거방법: 유치원 학부모 직접투표 선출[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, 우편투표 병행]

다. 학부모 위원 보궐 정수: 1명(유치원 1명)

라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년 5월 23일 ~ 5월 28일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4년 5월 10일

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상략)